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5736 판결 [소유권보존말소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57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6나1097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2. 22 선고 2004가합24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안성희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장원필

피고, 피상고인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윤중현

2. D

3.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장원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6나10974 판결

판 결 선 고 2007. 1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이송한다.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제21조).

그런데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원고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B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C, D, E이 위 건물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 처분금지가처분집행,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가압류집행, 처분금지가처분집행,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모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집행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소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을 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에 대한 부분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이 화성시 F 외 2필지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 그 대금을 그 판시와 같이 현금교부 및 위 다세대주택 중 18세대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02. 3.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하며, 피고 B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